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안전과 영양 관리 국제동향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외국의 동향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원용하여, 우리의 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1. 선진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의 방향

- 선진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환경적 지지 정책으로 식품광고 규제, 알기쉬운 영양표시 도입,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에 요인은 아동과 청소년 자신의 행동과 생활양식, 부모의 행동, 환경적 요인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식품광고, 영양표시, 학교 식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한 접근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전세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섭취 증가, 식품 광고나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환경으로 인하여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이러한 식생활이 성인기의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의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질병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데서 기인함

2. 식품광고 및 마케팅 규제 동향

- 어린이 광고 규제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임. 아동과 청소년을 광고와 마케팅 노출에서 보호하기 위한 광고 제한 조치는 강제나 자율규제 및 가이드라인 형태로 TV의 광고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서적으로 판단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이 확립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기는 식품광고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인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을 광고와 마케팅 노출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에 따라 의무적인 정부의 강제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두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TV의 광고 제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부 규제 국가 사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 영국은 2003년 12월 방송통신규제기구(Ofcom)이 출범하면서 기존 광고규제 체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음.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식음료광고포럼을 설립하고, 방송통신규제기구(Ofcom), 광고표준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와 함께 2007년 아동 대상 식음료 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함

- 그 내용은 어린이들이 지방, 당, 소금이 많은 음식(HFSS 식품)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매체와 비방송 매체에 대해 광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후 9시 이전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임. 새로운 규정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2007년 4월부터 유효하며, 2008년 1월에 16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확대되고 어린이 전용 채널의 HFSS 광고는 점진적으로 감소되며, 2009년 1월부터 아동대상 광고가 전면 금지됨
- 이러한 조치는 오랜 기간동안 식품기준기구(FSA)와 방송통신규제기구(Ofcom), 광고표준기구(ASA)가 함께 TV 식품광고가 아동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실시, 수년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시행후 효과와 HFSS 식품과 다른 식품의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Radio and Television Act 를 1991년 제정하여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의 모든 식품의 TV 광고를 24시간 금지하고 있는 광고 제한의 대표적인 국가임

□ 가공식품 광고에 건강메세지 게재 의무화 국가 사례: 프랑스, 아일랜드

○ 프랑스는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의 TV와 라디오 광고에 건강정보 게재 의무화

- 2004년 공중보건법을 개정하여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에 관한 TV 및 라디오 광고에 건강정보를 포함할 것을 의무화함
- 건강정보를 광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건강예방 및 교육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Prevention and Education)에 광고비의 1.5%를 건강한 식습관 증진 캠페인 비용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2005년 Children's Advertizing Code를 설정하여 아동에 대한 패스트푸드, 과자류 광고에 “건강한 식이를 적절하게 섭취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건강 경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함

□ 자율적 규제나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 미국, 호주, 캐나다, EU

○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아동 대상 광고 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현재는 식품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즉, 10대 대기업이 중심이 된 미국음료협회(ABA)에서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강령(Children's Food and Beverage Advertising Initiative)을 2006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Alliance for a Healthier Generation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소다음료와 가당음료 판매 자율적 금지 협약 제정, 할리우드 캐릭터 사용 금지와 함께 광고 메시지의 50% 이상을 건강한 식품 선택과 생활습관 향상하는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함

○ IMO에서는 식품 마케팅 규제와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권장방안을 제안

- 2006년 Institute of Medicine of National Academies(IMO)는 Food Marketing to Children and Youth: Threat or Opportunity? 에서 식음료 생산 및 홍보, 마케팅 표준, 부모와 가족, 학교환경, 공공정책, 연구부문에서 10가지 마케팅 표준지침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식음료 회사, 학교, 지방정부, 미디어의 역할과 영양표시 및 식품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 권장 방안을 발표함
- 호주에서는 아동의 TV 시청시간대 정크푸드 광고 금지 법안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하였으며, 대형식품업체 중심으로 아동 대상 식음료 마케팅에 대한 자율지침을 통하여 식품광고의 자율규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는 16개 대형 식품업체가 12세 이하 아동 대상 식품광고를 제한하고 건강한 제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에 합의함
- EU은 2007년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를 통하여 회원국의 모든 미디어 관계자들이 아동 대상 프로그램 방송에서 지방, 나트륨, 당을 다량 함유한 식음료 광고를 규제하도록 권고하였고, 유럽음료연합은 12살 미만 아동 대상 TV, 인쇄매체, 웹-사이트에서 탄산음료 광고를 금지하도록 합의함

3. 알기 쉬운 영양표시의 도입 동향

-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영양표시 방법으로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볼 수 있는 포장 전면(FOP) 표시가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 기존 가공식품 후면의 영양표시(nutrition labelling)와 아울러 전면(FOP, Front-Of-Pack) 영양표시가 자율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그 형태는 GDA형태, 신호등 표시제와 같은 Color-coded system, GDA와 신호등표시를 동시에 하는 Color-coded GDA, 스웨덴이나 네델란드와 같은 건강표시 로고(Health logs)가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GDA(Guideline Daily Amount) 표시 방식
 - GDA방식은 표시 식품의 에너지와 지방, 포화지방, 당류, 소디움 등 특정 영양소의 1회 용량(portion size)당 함량을 국제기준, EU 또는 각국 정부의 식이지침과 권장량과 대비하여 %로 표시하는 방법임
- 영국 신호등 표시(Traffic Light Labelling) 방식
 - 영국은 한눈에 알 수 있는 전면영양표시(FOP nutrition labelling) 도입을 2004년에 시작한 이후로 식품기준기구(FSA)에서는 2006년 3월 신호등 색상 사용을 포함하는 전면 영양 표시를 자발적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권고대상 식품은 건강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영양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가공편의식품 7가지 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06년 FSA의 권고 이후 신호등표시를 도입하는 업체가 꾸준히 증가함.^{1),2)}

1) Choosing Health White paper 2004,

http://www.dh.gov.uk/en/Publicationsandstatistics/Publications/PublicationsPolicyAndGuidance/DH_4094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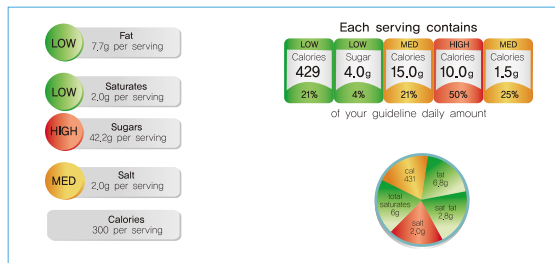
2) www.food.gov.uk/news/newsarchive/2006/mar/signpostnewsmarch

- 형태가 업체간 통일되지 않았으나 형태는 신호등 색상표시와 GDA를 병행하는 방식이 있으나 원칙은 3가지 색 + 1회 분량당 지방, 포화지방, 당류, 소금 표시로 동일함
- 호주,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나 식품산업체 자체에서 신호등 표시제를 지지하는 논의가 진행 중임

〈Guideline Daily Amount의 사례들〉



〈영국의 신호등 표시 유형〉



〈스웨덴의 Keyhole 표시〉

〈네델란드의 Healthy Choices 표시〉



□ 스웨덴 Keyhole

- 스웨덴의 Keyhole은 2005년 6월부터 시작된 규정으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함. 동일 종류의 식품을 비교할 때 keyhole 심볼 부착 상품은 저지방, 저당, 저염 또는 섬유소 함량이 높음을 의미함. 단, Keyhole 표기는 36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는 표시를 금지함. 표시 대상 식품은 유제품, 저지방 스프레드·마가린, 육류와 가공육제품, 어패류, 채식제품, 빵·파스타·씨리얼·밀가루·통밀가루, 즉석식품(ready meals), 채소, 과일 등임

□ 네델란드의 Healthy Choices

- Healthy Choices는 2006년 네델란드의 민간 식품 기업 3사가 만든 전면영양표시 심볼이며 계속 참여하는 식품산업체로 확대되어 2007년 7월에는 Choices International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약 50개국의 130여개 기업이 Choices Program에 참여하고 있음
-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의 검토로 일반기준과 맛과 기술 문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제품 특정기준이 사용되며, 필수영양소 또는 유익한 영양소(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소듐, 가당 + 에너지 / 섬유소)가 표기됨. 주요 표시식품군은 과일과 채소, 탄수화물 급원식품, 육류·생선·가금류·난류·육류대체품, 유제품, 지방·기름·지방 함유스프레드 등임³⁾

3) http://www.choicesinternational.org/images/cif_2007_qualifying_criteria_v1a.pdf

□ 유럽연합(EU)

- 2008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표시 지침(directive)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소비자 식품정보를 위한 유럽의회 규정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에 포장 전면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음.⁴⁾
- 전면 영양표시는 거의 모든 가공품에 대해 적용되며,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칸수화물, 당류, 염분의 함량이 100ml/100g 또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함. 다만, 발의된 법안에 신호등 표시제는 포함되지 않음
- 유럽의회는 영양정보 표시와 관련해서 영양정보가 중요하지만 교육과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영양정보,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양표시 방법과 표시대상 영양소를 검토함. 도입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편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GDA와 신호등 색상표시에 대해서 각국과 업계의 이해에 따라 찬반논란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업체의 Smart Choices 도입

- 미국은 정부의 전면영양표시에 대한 권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식음료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연합의 자발적인 전면표시인 Smart Choices ProgramTM가 2009년에 일부에서 도입되고 있음. Smart Choices ProgramTM은 19개 제품 카테고리별로 제한되는 영양소와 장려되는 영양소 규정을 충족시키면 체크 표시를 부착함
- 그러나 업계에서 이 표시를 도입하는 것이 정크푸드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무 신호등 시스템을 가로막기 위한 선점회피로 도입되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음

□ 캐나다의 Health Check 도입

- 캐나다의 심장뇌졸중재단에서 2007년 권장하는 건강표시 로고로 지방, 소디움, 식이섬유, 당류와 트랜스지방에 대한 기준이 포함됨

□ 패스트푸드와 외식의 칼로리 표시제 도입

- 가공식품이나 포장식품 외에 패스트푸드나 외식에 대한 칼로리 표시제가 자율적으로 도입중임. 영국에서 업체 자율로 실시하며 미국의 일부 주는 최근 주 입법을 통해 도입함
- 미국의 뉴욕시 보건부는 2008년 표준 메뉴 항목을 가진 레스토랑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매 시점에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칼로리 정보를 메뉴, 메뉴판 등에 게시할 것을 요청함
- 캘리포니아 주는 주 전체의 메뉴 표시제를 입법화한 최초의 주로 20개 이상의 체인식당에 칼로리와 탄수화물, 포화지방, 소디움의 영양정보를 브로셔나 표준 메뉴 또는 메뉴판 위, 진열대식품에 분명하게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하고 2009년 1월부터 시행함.⁵⁾
- 미국 필라델피아 주는 2008년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메뉴표시법안을 통과시켰음. 2010년 1월부터 15개 이상 체인을 가진 식당은 메뉴판과 메뉴에 칼로리를 게시해야 하며,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소디움, 탄수화물 함량에 대한 정보도 함께 게시하도록 함.⁶⁾

4) <http://www.bmj.com/cgi/content/extract/336/7639/296-a>

5) Senate Bill 1420

6) Nation's Restaurant News (2008,11,6)

http://www.nm.com/breakingNews.aspx?id=359940&menu_id=1368

- 영국 정부는 2009년 현재 패스트푸드와 체인 식당에서 주문시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칼로리 표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접근을 적용할 것을 장려함. 패스트푸드점, 레저시설, 병원, 직원 식당 등 18개 업체가 2009년 4월부터 메뉴판에 칼로리정보를 표시하기로 함
- 한편, 영국의 내각 사무처는 21세기를 위한 식품부문 전략에서 'healthy/healthier food mark' 개념을 2008년 7월 제시하였고, 식품기준기구(FSA)을 중심으로 영양가 높은 식품을 제공하고 더 건강한 식이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부문 식당, 교도소 등에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Healthier Food Mark'를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 의사협회는 패스트푸드의 칼로리 함량을 밝혀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잘 갖추게 할 목적으로 2009년 4월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학교 카페테리아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권장함⁷⁾
- 일본은 2002년 영양성분표시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2003년 동경도에서 외식요리 영양성분표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영양성분표시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4. 학교 공급 식품 표준 설정과 교육 · 홍보 강화

- 선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는 분야는 학교내 관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음.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관리를 보건부처, 교육부처가 공동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행 중임
- 미국
 - 미국 농림부(USDA)에서 비타민 ·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8종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 수준이 일일권장섭취량(RDI) 5% 이하인 식품을 '최소 영양가식품' (Foods of Minimal Nutritional Value; FMNV) 이라 칭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교 아침과 점심시간 급식 구역에서 판매를 제한함.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농림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학교에서 판매 가능한 음료리스트와 음료 판매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의 학교 급식 영양표준 관련 입법을 아직 없으나, 여러 주에서 학교 영양표준(School Nutrition Standards)을 제정하고, 자판기 제한, 급식영양지침/기준, 학교 wellness policy 를 수립하고 있음. 2008년 12월 현재 총 31개 주에서 학교 영양 표준을 설정하고, 관련 입법을 제정함
 - 미국 IMO(Institute of Medicine)는 2007년 학교 영양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식품 영양표준 권장방안을 마련함. 이 권장기준에는 식사대용, 간식용 식품, 음료에 대한 성분기준과 수업일과 방과후 활동시간을 포함하여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소듐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영국
 - 영국 식품기준기구(FSA)은 새로운 학교 식품표준(School Food Standards)을 도입하여

⁷⁾ <http://bmimedical.blogspot.com/2009/04/breaking-news-oma-call-for-posting-of.html>

학교내 자판기, 매점에 대한 표준을 규정함. 여기에는 고지방과 고열량 고나트륨 식품의 제한과 과일과 채소의 이용 제고, 생수와 건강음료에 대한 규정과 열량을 포함한 14가지의 영양소 기준을 정함. 최근에는 학교의 과일 매점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영국은 2005년 아동·학교·가족부(DCSF)에서 학교 음식과 급식 기술을 혁신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건강증진과 학교 식품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SFT(School Food Trust)를 설립하여 학교 식품의 표준을 높이고, 실제적인 조리 기술을 교실에서 더 잘 가르치고 조리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함.⁸⁾
- 미디어 캠페인인 'Million Meals' 실시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식사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학교의 참여를 권장함
- 또한 건강한 식사를 중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National Healthy School Program을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족부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모든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현재 전국적으로 98%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74%의 학교가 National Healthy School Status를 취득하였음.⁹⁾

□ 호주

-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식품을 3가지 범주(green, amber, red)로 구분한 food-based guideline을 설정하였고, 2007년부터 고당류 탄산음료의 학교 식품공급과 판매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과자류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07~2009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는 학교급식 관리 주관 부처가 농림수산부, 경제재정산업부, 교육부, 보건부 4개 부처에서 관장하며, 2001년 6월 '학교 급식 영양기준 및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 급식의 영양기준 및 학교 식품 안전에 관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급식관리에서 식사 문화, 영양교육, 맛 교육 등 학교 내 식품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
- 공중보건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학교에서 간식 및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프랑스 전국 학교에 설치된 모든 음료수 및 식품 자동 자판기가 철거됨
- 일반인들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건강영양 로고인 'PNNS 로고'를 개발하여 PNNS에서 권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정보에 마크를 부여하여 일반인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르게 먹고 마시기 웹사이트를 운영함¹⁰⁾

5. 시사점

- 국제적으로 식품교역이 활발하고, 수입식품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우리나라로서

8) www.schoolfoodtrust.org.uk/index.asp

9) www.healthyschools.gov.uk

10) www.Mangerbouger.fr

는 선진국가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품의 선택을 돕기 위해 최근 도입되거나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정책, 제도, 사업들을 검토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당연과제임

○선진국은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및 영양 관리 정책은 없으나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식품과 영양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두고 있음

□ 아동 대상 광고(마케팅) 제한은 국가별로 시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법제화 여부를 놓고 논의가 활발함

□ 가공 및 포장식품 전면 영양표시제(FOP labelling)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임

○전면 영양표시제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보다 이해하기 쉬운 전면표시에 실시 요청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영국은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고 업체 자율을 권장하여 확대되고 있음. 유럽의회나 호주 협회 등의 반응을 감안할 때 추진에는 다소 논란이 있음

○한편, 각종 전면 영양표시 로고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와 함께 표시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음

□ 선진국은 무엇보다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내 식품 공급을 관리하고, 영양표준의 설정과 아울러, 학교 내 급식 및 구내매점, 자판기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임. 아울러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국가별 추진 방식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교육부서와 긴밀한 협력하에 보건부처가 주도적으로 또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규제, 과일과 채소의 섭취 증가, 급식의 영양기준 설정 및 시행, 음료수 관리, 학교 건강 매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아동과 청소년기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교육홍보가 환경여건 조성의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높으며, 교육부처와 보건부처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인 제도 시행은 다른 국가의 모델사례가 될 것임

○최근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2008년 제정하고, 아동의 시청시간 대인 오후 5시~7시 광고시간 제한 조치가 201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하여 권고할 예정임. 외국의 사례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김혜련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문의사항 hrkim@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